

< 첨부 1 >

## ▣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

**\* 정의**

사업주가 소속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

**\* 비용지원 예시**

훈련종류	비용지원내용
자체집체훈련	직종별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조정계수 X 지원비율 예시: 2,410원 X 8시간 X 16명 X 2.102 X 1.0 = <b>약 65만원</b> ※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 됩니다. ※ 교육시간 및 참여 인원에 따라 환급액이 증가 또는 감소 됩니다.

**\* 지원요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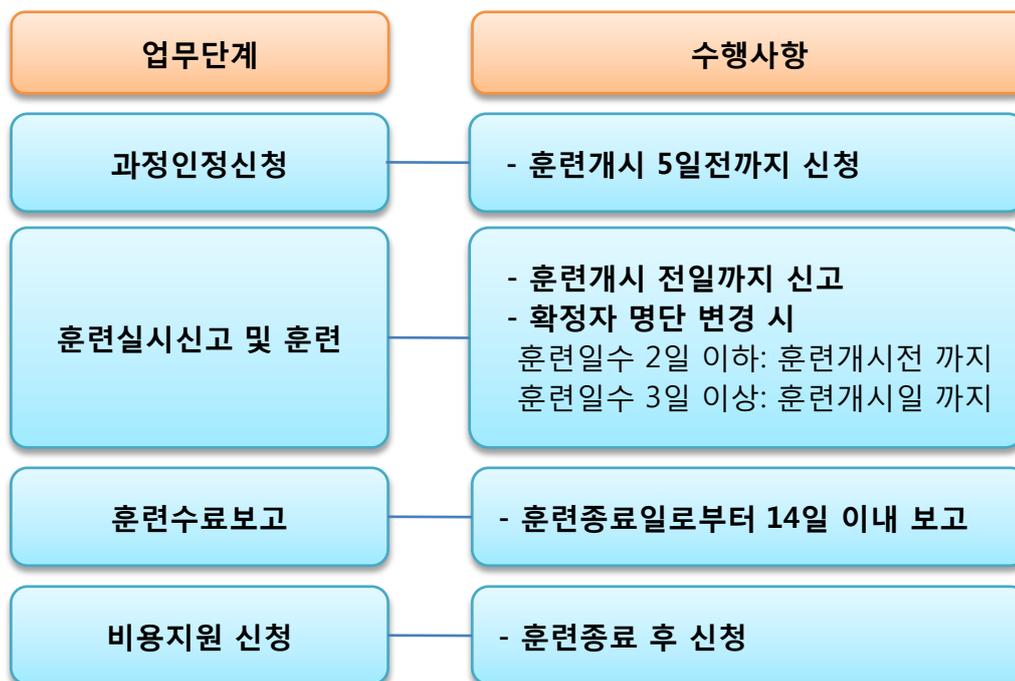
- 전체 훈련의 80% 이상 출석

**\* 지원한도**

-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,  
(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% 지원)

**\*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**

- 훈련수료 후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·지사에 신청  
제출서류 : 비용지원신청서, 수료자명부, 비용증빙서류 등



※ 업무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·지사의 사업주 능력개발훈련 지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